##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1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서영교·권칠승·윤준병

박희승 • 이해식 • 이연희

박홍배 · 김종민 · 안호영

강유정ㆍ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수영, 헬스, 요가 등의 체육시설 이용비를 일정부분 지출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임.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만한 실효적인 대책 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자와 그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로 한정)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고자함(안 제59조의4 등).

####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제59조의4제9항"을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4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를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말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59조의4제4항제2호"를 "제59조의4제5항제2호"로,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 5항"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중 "제59조의4제4항"을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료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4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각각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0항"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
입) ① ~ ④ (생 략)	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⑤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	
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	
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 <u>제59조의4제4항</u> 에 따라	<u>제59조의4제5항</u>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	
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b>.</b>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	2
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생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59조의4제10항
,	
<b>.</b>	

- ③ (현행과 같음)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 ③ (현행과 같음)
  -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말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일 이전에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 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 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생략)
- 8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 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u>6</u>	제4항
	<u>제4항</u>
<u>⑦</u>	<u>제5항</u>
<u>⑧</u> (현행 제7항	과 같음)
0 3-53	
<u> ⑨</u> 제5항	
<u> </u>	

에	대	한	산	출세	액	<u> </u>	저	외	한디	十)
에스	4	공기	세하	는	경	우	게 -	는	같	은
항이	4)	따른	三人	레 액	공지	베인	H	외	케	같
슨	항	긱	- টু	의	기	부	급	을	합	한
금 약	백어	l서	사	업소	_득	금	액	을	계	산
할	때	필	요건	불비	에	산	입	한	기	부
금을	<u> </u>	뺀	금	백이	3	천'	만	원을	<u>)</u> =	초
과히	하는	- 7	경우	ユ	초	과	분	에	대	해
서는	<u>-</u>	100	)분 :	의	10	케	5	채딩	하	는
금	백을	: Ā	≤가.	로 -	공자	ll 힌	- C	<b>}</b> .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 2. (생략)
- ① 제1항부터 <u>제9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u> </u>
1
제7항
2. (현행과 같음)
<u> ①</u> <u>케10항</u>
,

#### ①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 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 세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
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①
제4항
2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생략)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 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 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 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 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

<u>제59</u>
조의4제5항제2호
<u>제59조의4제5항</u>
③ (현행과 같음)
세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ㆍ
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59조
 의4제5항

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 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③ (생 략)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 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 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 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 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 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 다.

<u>.</u>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5조(표본조사 등) ①
<u>제5</u>
9조의4제5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